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71
----------	-------

발의연월일 : 2022. 1. 19 .

발 의 자 : 권은희 · 이용우 · 강민국
김정재 · 윤주경 · 김기현
김예지 · 윤창현 · 조명희
최연숙 · 홍준표 · 유동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관련자 등에 대해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조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찾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시키고, 이 같은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라목 신설 및 안 제10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
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업무 또는”을 “금융감독업
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업무 또는”으로, “금
융위원회 또는”을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
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의 사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국가정보원장”을 “예금보험공사의 사장, 국가정보원장”으로 하
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를 “범죄혐의,
조세탈루혐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 관련 책임”으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를 “공
무원(담당자 및 책임자) 또는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u><신설></u> 6. (생략)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6.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 ----- ----- ----- ----- ----- ----- -----

채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업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업무 또는-----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의 사장 또는-----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예금보험공사의 사장, 국가정보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 (생략)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범죄혐의, 조세탈루혐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 관련 책임-----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2. (생략)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u>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u>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 ~ 7. (생략) ⑧ ~ ⑫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u>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 또는</u> <u>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u> ----- 4. ~ 7. (현행과 같음) ⑧ ~ ⑫ (현행과 같음)
---	--